

『호모 미그란스』 편집 규정

제정: 2009년 2월 16일

제 1장 편집위원회

- 제 1조 (편집위원회) 본 연구회는 학술지 『호모 미그란스 - 이주, 식민주의, 인종주의(Homo Migrans - Migration, Colonialism, Racism)』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 위원회를 둔다.
- 제 2조 (구성, 소집, 의결)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.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,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3조 (기능)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계획, 논문 투고 및 심사, 기타 원고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
제 2장 투고

- 제 4조 (투고 자격) 원칙적으로 학술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. 편집위원회는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비회원에게도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.
- 제 5조 (원고의 종류)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글은 연구논문, 비평논문, 서평 및 기타로 한다.
- 제 6조 (원고작성요령) 투고 논문의 분량, 원고 작성상의 주의점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을 둔다.
- 제 7조 (학회지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)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. 이를 위해 필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(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) 또는 우편으로 본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저작권의 수입은 본 연구회에 귀속된다.

제 3장 심사

- 제 8조 (심사위원)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.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.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.

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.

제 9조 (심사 기준)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.

- 1)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
- 2) 논문 주제의 독창성 및 학술적 가치
- 3) 논리전개의 명확성 및 문장 표현력
- 4)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여부
- 5)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

제 10조 (심사 결과 및 판정) 심사결과는 A(게재 가), B(수정 후 게재 가), C(수정 후 재심사), D(게재 불가)로 구분한다.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.

A, A: 게재

A, B: 게재

B, B: 수정 후 게재

A, C: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,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

A, D: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,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

B, C: 수정 후 재심사

B, D: 수정 후 재심사

C, C: 수정 후 재심사

C, D: 게재 불가

D, D: 게재 불가

제 12조 (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)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13조 (심사 결과 통보)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.

제 14조 (기타 원고 심사)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형식, 내용, 분량 등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.

제 4장 학술지 발행

제 15조 (발행자): 이주사학회 회장으로 한다.

제 16조 (발행횟수 및 일자): 연 2회,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행한다.

제 17조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